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제2015-7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

사규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각 팀에서 의뢰한 사규 개정·폐지(안)에 대하여 「제2015-7차 사규심의위원회」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
1. 일 시 : 2015.11.6(금) 14:00
2. 장 소 : 14층 기획상황실
3. 참석대상
   가. 심의위원(10명)
      - 위 원 장 : 기획경영본부장
      - 위 원 : 경영지원처장, 재정전략팀장, 계약팀장, 회계팀장, 전세지원팀장, 재생기획팀장, 공공토지팀장, 수납팀장, 법무팀장
   나. 입안부서 관계자(아래 입안부서 참조)
4. 심의안건

연번	개정사규	개정요지	입안부서
1	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규정시행내규(안)	○ 직원의 직책 신설(조장) ○ 정원외 인력 운영근거 신설 ○ 경력환산 적용비율 등 변경	집단에너지사업단
2	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(안)	○ 규정의 목적 변경(경영관리→경영성과 달성) ○ 경영관련위원회 설치(경영계획 등 심의·자문)	재정전략팀
3	연구직직원인사관리 시행내규(안) 및 연구직직원연구실적 평가내규 폐지(안)	○ 연구직 직원의 평가 구성 ○ 연구직직원연구실적평가내규를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연구직직원인사관리시행내규로 신설하여 개정.	도시연구소
4	인사규정(안)	○ 비위면직 처리된 공직자 등의 공사로 (재)취업 제한 ○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 삭감비율을 강화 ○ 일반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	인사팀
5	인사규정 시행내규(안)	○ 징계혐의자에 진술권 보장관련 절차규정 신설 ○ 징계양정기준상 성희롱 외에 성추행, 성매매를 신설. ○ 음주운전관련 기준 개정.	
6	임직원행동강령(안)	○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관계 방지 ○ 재직 중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○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	행정감사팀
7	공익신고처리내규(안)	○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	
8	감사규정(안)	○ 감사인의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	

5. 의결방법 : 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   (※입안부서의 장인 위원은 해당사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)

붙임 1. 사규심의위원명단(제2015-7차)
2. 심의안(2015-7차)
3. 수정입안내역. 끝.

팀 원	김채원	법무팀장	강기언	경영지원처장	김광석	기획경영본부장	김우진

11/03

협조자

시행 법무팀-3699 (2015.11.03) 접수 ()
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400호
우 138-201 /
전화 3410-7128 전송 3410-7131 / cw0131@i-sh.co.kr / 비공개(5)